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논문, 연구노트, 서평 등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소 책임과 의무) 연구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4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제6조(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한다.

1.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한다.
3. 위 원: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 학자 4인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제 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간 사: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소 편집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투고된 논문이나 간행된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1)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5) 제보자는 예비조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위원장은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구 성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해당 연구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3.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

중 판정을 내린다.

제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보된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 연구 성과물을 삭제하며, 연구소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KCI와 KERI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연구 성과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연구자는 연구소의 학술지에 5년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10조(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분이 노출되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연구소가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2. 제보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4. 해당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 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 02.08,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에 따른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1년 3월 21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 2009.09.23.)”에 따른다.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지원사업연구단(HK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이 간행하는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편집간행,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투고된 논문의 전공과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 결과에 의거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3조(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은 로컬리티 연구와 관련된 제 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한 전문학자로 구성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3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2. 편집위원은 각 학문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3. 편집위원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운데에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단장이 위촉하며 총인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가운데에서 연구단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심사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3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제5조(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1.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1심사위원	제2심사위원	제3심사위원	최종판정
1	A	A	A	게재
2	A	A	B	게재
3	A	A	C	수정 후 게재
4	A	B	B	수정 후 게재
5	B	B	B	수정 후 게재
6	A	A	D	수정 후 게재
7	A	B	D	수정 후 게재
8	A	B	C	수정 후 게재
9	A	C	C	수정후 재심사(*)

10	B	B	C	수정후 재심사
11	B	C	C	게재 불가
12	A	C	D	수정후 재심사
13	A	D	D	게재 불가
14	B	B	D	수정후 재심사
15	B	C	D	게재 불가
16	B	D	D	게재 불가
17	C	C	C	게재 불가
18	C	C	D	게재 불가
19	C	D	D	게재 불가
20	D	D	D	게재 불가

* 최종 재심판정의 경우, 심사위원 1명을 기존 심사위원 혹은 신규 위촉하여 심사한다.

4. 게재 판정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로 판정 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보류된 일부의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때 심사요지를 첨부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7조(간행 회수) ‘학술지’는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1일) 간행한다.

제8조(논문 투고) 논문 투고는 “『로컬리티 인문학』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9년 2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1년 3월 21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3년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6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

『로컬리티 인문학』 투고 규정

1.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인문학과 그 인접분야 전공자들로 한다. 논문의 내용은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2. 투고자는 아래의 사항을 주지해야 한다.
 -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와 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로컬리티 인문학』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DBPIA의 학술정보 서비스 등에서 제공된다.
 - 2) 투고자는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구성 체제는 다음과 같다.
 - 1) 원고는 논문제목, 필자명, 국문초록,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 2)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초록, 도표를 포함해서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3) 초록은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논문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한다.
 - 4) 논문은 한글 2002 이상으로, 편집 스타일은 연구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란을 참조한다. (<https://pncc.pusan.ac.kr/pncc/50092/subview.do>)
4. 원고모집 기한은 매년 3월 5일(4월 30일 발간)과 9월 5일(10월 31일 발간)로 한다.
5.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si.jams.or.kr>)으로 투고해 주십시오.
※ 위 시스템 접속 후 <논문투고시스템 투고방법안내> 참조.

6. 원고 작성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인 경우 이를 논문제목 우측 상단에 (*)기호를 붙이고, 각주에 (*)기호로 축약본 또는 일부임을 명시한다.
- 2)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각각의 이름 우측 상단에 (*)기호를 붙인다. 각주란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 각각의 소속을 밝힌다.

예) 홍길순*, 홍길동**

각주란: * 제1저자, 한국대학교 사학과 교수(hong@hankuk.ac.kr)

** 공동저자, 민주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hong@minju.ac.kr)

- 3) 외국어로 된 인용문은 가급적 한국어로 번역하여 본문에 쓰고, 원문을 명기해야 할 경우는 각주에 기재한다.
- 4) 본문의 분류번호는 1, 1), (1), ①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로 표시하고, 자료는 〈자료 1〉: ○○○라고 쓴다.
- 6)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 (또는 Ibid.)’ 등으로,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 7) 각주의 내용은 다음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 ① 저서: 저자 이름, 『책이름』, 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다만 간행 지역은 생략할 수 있다)

예1) 홍길동, 『춘향전 연구』, 부산: 세종출판사, 2008, 287쪽.

예2) 홍길동 편, 『춘향전 연구』, 부산: 세종출판사, 2008, 287쪽.

예3) Quentin Skinner, *Hobbes and Republican Lib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23~24.

- ② 번역서: 원저자 이름, 원서 이름, 역자 이름, 『역서 이름』, 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예) Darrin M. McMahon, *Happiness: A History*, 윤인숙 옮김, 『행복의 역사』, 서울: 살림출판사, 2008, 330쪽.

③ 논문: 저자 이름, 「논문 이름」, 『학술지 이름』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 쪽수.

예) 홍길동, 「춘향전의 사실 구성원리」, 『한국민족문화』 제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12, 123~125쪽.

예) 성춘향, 「광한루 단상」,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의 문화유산』, 부산대출판부, 1998, 235쪽.

④ 구미문헌: 논문 제목은 큰따옴표(“ ”)로 묶고, 저서명과 게재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1) Valerie Bryson, “Marxism and Feminism: Can the ‘unhappy marriage’ be saved?”,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9, No.1, February, 2004, p.23.

예2) Pierangelo Di Vittorio, “From Psychiatry to Bio-Politics or the Birth of the Bio-Security State”, Alain Beaulieu and David Gabbard eds., *Michel Foucault and Power Today*, Lanham: Lexington Books, 2006, pp.71~80.

⑤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수여기관 학위구분, 학위수여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로컬리티 인문학에 대한 일고찰』,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⑥ 신문: 신문 이름, 발행 년 월 일.

예) 『한겨레신문』, 1998. 3. 25.

⑦ 漢籍 고서의 경우 다음의 예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예) 『論語』 卷1, 學而.

『英祖實錄』 卷51, 英祖 16年 6月 壬申(3日).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一然,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96, 132쪽.

⑧ 인터넷상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http://news.joins.com/nknet.html> (검색일: 2004. 9. 10.)

⑨ 영화 및 기타 장르: 영화제목, 감독, 출연배우, 배급사, 배급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친구>, 광경택 감독, 장동진, 유오성, 코리아픽쳐스, 2001.

8) 주제어는 본문 밑에 5단어를 논문과 동일한 언어와 영어로 각각 명기한다. 영문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예) 로컬, 로컬리티, 로컬리톨리지, 세계화, 장소성

Local, Locality, Localitology, Globalization, Placeness

9) 참고문헌은 한국어문헌, 외국어문헌(동양서, 서양서 순)의 순으로 각각 배열하되, 성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가나다 순 혹은 abc순으로 한다. 같은 이름의 필자일 경우는 연대순으로 한다.

예1) 홍길동, 『춘향전 연구』, 부산: 세종출판사, 1998.

예2) 홍길동, 「춘향전의 사설구성 원리」, 『한국민족문화』 제9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예3) McMahon, Darrin M., Happiness: A History, A Grove Press, 2006.

예4) Bryson, Valerien, "Marxism and Feminism: Can the 'unhappy marriage' be saved?",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9, No.1, February, 2004.

예5) Vittorio, Pierangelo Di, "From Psychiatry to Bio-Politics or the Birth of the Bio-Security State", Alain Beaulieu and David Gabbard eds., Michel Foucault and Power Today, Lanham: Lexington Books, 2006.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학술지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7. 투고하는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투고 논문의 마지막 쪽에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인적사항]

1) 논문제목(국문, 영문), 2) 필자명(국문, 영문), 3) 근무처, 4) 직위, 5) 전공분야,

6) 주소, 7) 전화번호, 8) E메일주소, 9) 투고일

8. 게재된 논문의 필자에게 pdf 형식의 논문 파일과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9.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9년 2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5년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6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발생한다.

『로컬리티 인문학』 투고 안내

부산대학교 『로컬리티 인문학』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아우르는 학술지를 지향합니다.

- (1) 이론학과 실천학을 종합하는 로컬리톨로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분과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통섭적인 방법으로 로컬과 로컬리티 연구를 지향한다.
- (3)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로컬리티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 (4) 로컬 현실에 적극 개입하며 탐구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인문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한다.
- (5)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개발하여 연구 성과의 학문적 논리성을 더욱 향상 시키도록 한다.

『로컬리티 인문학』은 매년 2회 발간됩니다.(4월 30일, 10월 31일 발간)

『로컬리티 인문학』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논문은 **논문투고시스템**(<http://ksi.jams.or.kr>)으로 투고해 주십시오.
※ 위 시스템 접속 후 <논문투고시스템 투고방법안내> 참조.

1. 투고 마감 : **발간일 전월 5일(매년 3월 5일/ 9월 5일)**
2. 원고분량 : 영문초록,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편집규정, 윤리규정, 심사규정은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연구소 홈페이지(<https://pncc.pusan.ac.kr>) -발간물-로컬리티인문학을 참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족문화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웹메일: locality@pusan.ac.kr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전 화: 051-510-1882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편 집 위 원 장 : 문 재 원(부산대)

편 집 위 원 : 김 은 미(대만 국립대만사범대학)

김 치 완(제주대) 라오파웨이(중국 상해대학)

박 정 석(목포대) 손 안 석(일본 가나가와대학)

육 주 원(경북대) 이 상 봉(부산대)

이 영 민(이화여대) 조 관 연(부산대)

편집위원 및 간사 : 오 현 석(부산대)

로컬리티 인문학

27

인쇄일 2022년 4월 30일

발행일 2022년 4월 30일

발행인 차 철 욱

편집인 문 재 원

인 쇄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전화 051) 510-1932, 1933, 팩스 051) 512-78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전화: 051) 510-1882, 팩스: 051) 581-5655

E-mail: locality@pusan.ac.kr(편집위원회)

pncc@pusan.ac.kr(행정실)

http://pncc.pusan.ac.kr

〈비매품〉